



## 한국형 실업부조

# 국민취업지원제도가

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!



### ■ 지원서비스

구분		I 유형	II 유형
내용	취업지원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☑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</li> <li>☑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</li> <li>☑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</li> </ul>	
	구직촉진 수당	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(월50만원×6개월)	
	취업활동 비용		참여수당 최대 195만 4천원 (직업훈련 참여시)
	취업성공 수당	취(창)업시 최대 150만원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시)	
	조기 취업 성공 수당	I 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 이내 취(창)업시 1회 50만원 지급	
취업지원기간		12개월(6개월 연장 가능)	
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☑ 생계급여수급자</li> <li>☑ 실업급여·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(청년수당 등)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</li> <li>☑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</li> <li>☑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상인 자</li> </ul>	

### ■ 지원자격

\*선발형 :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

구분		I 유형		II 유형		
요건	연령	요건심사형 / 선발형* 15~69세	청년 18~34세	특정계층 15~69세	청년 18~34세	중장년 35~69세
	소득	중위소득 60% 이하	중위소득 120% 이하	무관		중위소득 100% 이하
	재산	4억원 이하	5억원 이하	무관		

**신청 · 접수**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

<https://www.kua.go.kr>



문의 고용센터 (국번없이) 1350



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



#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감안!

## 특정계층

- ①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  - 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
  - ③ 북한이탈주민
  - ④ 신용회복지원자
  -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
  - ⑥ 위기청소년
  - ⑦ 구직단념청년
  - ⑧ 여성가구주
  - ⑨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
  - 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
  - ⑪ 건설일용직근로자
  - ⑫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
  - ⑬ 미혼모(부)·한부모
  - ⑭ 청소년부모
  - ⑮ 기초연금수급자
  - ⑯ 영세자영업자
- ※ 위기청소년 등 :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, 보호종료 아동 등

## (소득·재산)

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(①신청인 본인, ②신청인의 배우자, ③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, 자녀)로 공적시스템(공적자료)으로 연계되어 산정

- (소득) 근로·사업·재산·이전소득이 해당
- (재산)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를 포함

## \* (2022년 기준 중위소득)

\*단위 : 원/월

구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중위소득 60%	1,166,887	1,956,051	2,516,821	3,072,648	3,614,709	4,144,202	4,668,355
중위소득 100%	1,944,812	3,260,085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2
중위소득 120%	2,333,774	3,912,102	5,033,641	6,145,296	7,229,418	8,288,405	9,336,710

## 취업경험 확인

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기준 이상(요건심사형), 기준 미만(비경험 선발형)

- 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
  - ② 특고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
  - ③ 사업자등록기간. 다만,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
  -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·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
- (특고·프리랜서 등)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,056천원(최근 3년 최저임금을 평균한 금액 적용시)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
## 신청방법

- 신청주체**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신청
- 신청방법** 온라인(www.kua.go.kr) 또는 오프라인(방문)
- 신청장소**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
- 신청기간** 연중 상시
- 제출서류**

- (필수) 취업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- \*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



Ch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 +

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상담 챗봇에서 확인해주세요!